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안

의안 번호	760
----------	-----

제안년월일 : 2019. 6. 14.

제안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1. 주문

국가안전대진단 기간(19.2.15~4.19) 동안 서울시 관내 공사장의 타워크레인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제도적 미비점들이 발견되어 관련법령(「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국가기술훈자격법 시행규칙」 등) 개정을 건의함.

2. 제안이유

- 지난해 정부의 「타워크레인 특별 안전점검」(18.1월) 이후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18.9월)되면서 관련서류 구비, 조종사 및 신호수 특별안전교육 등 상당부분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2.15~4.19) 동안 서울시가 관내 공사장에서 운용 중인 타워크레인 중 13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기계분야에서 40건, 안전관리분야에서 15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었으며, 이 중 34건은 관련법령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등 안전사각 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가 조사한 결과에 토대하여 타워 크레인의 사고예방을 위한 현행 관련법령의 미비점 보완책을 마련하고 이를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건설기계 관리업무 처리규정」,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나. 기타사항 : 없음

4. 이송처

가. 국회 :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나. 정부 :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5. 첨부 : 서울특별시의회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안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안

- 최근 고층건물의 증가 추세와 더불어 이들 공사현장에서 운용하고 있는 타워크레인(2019.3.12일 현재 서울 관내 380대 운용)의 각종 안전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어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미비점 보완 및 정비가 시급한 실정임.
- 지난해 정부의 「타워크레인 특별 안전점검」(18.1월) 이후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18.9월)되면서 관련서류 구비, 조종사 및 신호수 특별안전교육 등 상당부분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2.15~4.19) 동안 서울시가 관내 공사장에서 운용중인 타워크레인 중 13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기계분야에서 40건, 안전관리분야에서 15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었으며, 이 중 34건은 관련법규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등 안전사각 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 서울시 점검결과에 따르면, 일부 현장에서 관련서류(대여사항 기록부, 작업계획서, 설치·해체 영상 등)의 미비점이 발견되고 있고, 타워크레인 작업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공사현장과 타워크레인 기종에 미숙한 근로자 투입으로 사고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와,

- 마스트 등의 부위에 제작사 및 제작자 식별이 불가능한 검증되지 않은 부품이 사용된 사례 등이 발견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 이를 규제할 조항이 없어 이에 따른 관련법 개정이 요구된다 할 것임.
- 또한, 현행 건설기계등록원부에는 새김압형을 보존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제작증’에도 새김압형을 1개만 부착토록 하고 있어 부품을 임의로 교체해도 확인이 불가능한 문제점과,
- 크레인 사고의 주원인이 설치·해체작업의 부실에서 기인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는 설치·해체에 대한 영상기록보존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사고 발생 후 원인분석을 어렵게 하는 문제와 설치·해체 전문가 부족 문제 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서울시의회는 크레인 인증 의무 부품에 마스트를 포함하고 건설기계제작증에 새김압형 부착 개소 수를 늘리는 한편, 설치·해체 작업의 영상 보관을 의무화하고, 책임운전자를 지정하여 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해줄 것을 건의하는 바임.
- 하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에 ‘타워크레인 마스트’를

추가할 것을 건의한다.

- (현행) 타워크레인 마스트 없음 → (개선) 타워크레인 마스트 추가

- 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시·도지사는 건설기계제작증에 부착된 새김압형이나 재새김을 한 새김압형을 등록원부와 함께 보존토록 의무화함은 물론,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서식 1]에 새김압형 부착란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건의한다.

- (현행) 새김압형 보존의무 없음 → (개선) 건설기계제작증에 부착된 새김압형이나 재새김을 한 새김압형을 등록원부와 함께 보존하도록 함
- (현행) 새김압형 부착란에 부착위치 명시 안됨 → (개선) 새김압형 부착위치를 4개 소로 구체적 명시

- 셋,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4조의3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에 관한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강화할 것을 건의한다.

- (현행)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 및 인상작업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개선)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 및 인상작업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넷,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제1항에 유해·위험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를 책임작업자로 지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할 것을 건의한다.

- (현행) 유해·위험작업에 책임근로자 지정 없음 → (개선) 유해·위험작업에 자격을 가진 근로자를 책임작업자로 지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다섯,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을 신설할 것을 건의한다.

- (현행)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에 관한 기술자격 별도 종목 없음 → (개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 신설

○ 여섯,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별표 1〕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자에 한하도록 개정할 것을 건의한다.

- (현행)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자격에 판금제관 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 자격자 가능 → (개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자에 국한

붙임)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안 조문대비표

2019. 6. 1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

[붙임]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안 조문대비표

① 타워크레인 제작 보수 시 인증되지 않은 마스트 사용에 대한 개선안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3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3(건설기계부품 인증 등) 법 제2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이란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부품을 말한다. 1.~2. (생략) <u>《신설》</u>	제12조의3(건설기계부품 인증 등) ----- ----- ----- ----- ----- 1.~2. (현행과 같음) <u>3. 타워크레인의 마스트</u>

② 새김압형 1개소 부착에 따른 부품 임의교체 확인 불가에 대한 개선안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건설기계등록원부등) ①~③ (생략) <u>《신설》</u>	제11조(건설기계등록원부등) ①~③ (현행과 같음) <u>④ 시·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건설기계소유자가 등록신청을 할 때 첨부한 건설기계제작증에 부착된 새김압형이나 법 제11조에 따라 재새김을 한 새김압형을 등록원부와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u>

-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건설기계제작증(제11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건설기계제작증 (상단 생략) · 새김압형 부착란 상기와 같이 제작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제작사명 : 대표 (인)	건설기계제작증 (상단 생략) · 새김압형 부착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상부</td> <td style="text-align: center;">턴테이블</td> <td style="text-align: center;">(압형부착)</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중부</td> <td style="text-align: center;">마스트 (단수, 등록번호)</td> <td style="text-align: center;">(압형부착)</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하부</td> <td style="text-align: center;">메인지브</td> <td style="text-align: center;">(압형부착)</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카운터지브</td> <td style="text-align: center;">(압형부착)</td> </tr> </table> 상기와 같이 제작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제작사명 : 대표 (인)	상부	턴테이블	(압형부착)	중부	마스트 (단수, 등록번호)	(압형부착)	하부	메인지브	(압형부착)	카운터지브	(압형부착)
상부	턴테이블	(압형부착)										
중부	마스트 (단수, 등록번호)	(압형부착)										
하부	메인지브	(압형부착)										
	카운터지브	(압형부착)										

③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영상기록보존성 담보에 대한 개선안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4조의 3

현 행	개 정 안
제124조의3(영상기록장치) 타워크레인 제작자 또는 소유자는 타워크레인의 설치, 해체 및 인상작업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에 영상기록장치를 <u>설치할 수 있다.</u>	제124조의3(영상기록장치) ----- ----- ----- ----- ----- <u>설치하</u> <u>여야 한다.</u>

④ 타워크레인 운전자 미제한에 따른 사고발생 우려에 대한 개선안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47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① -- ----- ----- ----- ----- <u>근로자를 책임</u> <u>작업자로 지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u> <u>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책임작업자가</u> <u>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u> <u>는 아니 된다.</u>

⑤ 설치·해체 전문종사자 부족에 대한 개선안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제3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직무분야	중직무분야	기술·기능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 기사	기능사
						《신 설》
16 기계 (7/81)	162 기계장비 설비·설치 (31)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제3조제1항 관련)

현 행			개 정 안		
작업명	작업 범위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작업명	작업 범위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21.타워크레인 설치 (타워크레인을 높이는 작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체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판금제관 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 2)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수료시험 합격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21.타워크레인 설치 (타워크레인을 높이는 작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체작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의 자격